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94

발의연월일: 2020. 8. 14.

발 의 자: 안규백・양정숙・전혜숙

최기상 · 김승원 · 김민철

김민석 • 민홍철 • 이상직

박용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사업의 범위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, 대수선(大修繕), 리모델링 등의 건축행위로 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유재산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의 범위는 법 개정(시행 2018. 3. 13.)에 따라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 등으로 확대되었음. 이로 인해 국유지에 비해 공유지의 위탁개발사업 범위가 협소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 개발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.

이에 공유재산의 개발의 범위를 위탁개발에 한하여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한편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의3).

법률 제 호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3제1항 중 "개발[「건축법」 제2조에 따른 건축, 대수선(大修繕),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]하고"를 "개발하고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전단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, 같은 항 후단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전단 중 "제3항"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- 1. 「건축법」 제2조에 따른 건축, 대수선(大修繕), 리모델링 등의 행위
- 2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도시개발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주택법」, 「택지개발촉진법」 및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43조의3(위탁재산의 개발) ① 제43조의3(위탁재산의 개발) ① -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을 받아 개발[「건축법」 제2 -----개발하고-----조에 따른 건축, 대수선(大修 繕),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. 이 하 이 절에서 같다]하고, 발생 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. <신 설>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 1. 「건축법」 제2조에 따른 건 축. 대수선(大修繕), 리모델링 등의 행위 2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,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,「도시개발법」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<u>「주택법」</u>, 「택지개발촉진 법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 를 조성하는 행위

-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~ 3. (생략)
- ③ <u>제2항</u>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~ 3. (생략)
-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 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. 이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.

③ <u>제1항 및 제2항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④</u> 제3항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⑤ 제4항
,
<u>제4항</u>
<u>⑥</u>
<u>제2항</u>